

4. 質 疑 및 答 辯 要 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

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5. 2. 18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0월 7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7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4차 시민행정위원회(2004.10.15) 상정 · 의결(보류)

제14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2. 18) 상정 · 의결(수정)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황 의 진)

가. 제안이유

○종로구 발전에 기여한 내·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우리구 명예구민증수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(안 제2조제1항)

- 타시·군·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
-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,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, 통상 협력 또는 서울특별시종로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
-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외국인

○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, 구 의원 및 공공단체의 장,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, 10인 이상의 종로구민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함.(안 제3조)

-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하고 메달이나 기념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음. (안 제5조제1항)
-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구정 관련 위원회 및 구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)
-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. (안 제7조)
-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함. (안 제9조제2항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- 조 기 태 위원 의 수정안 동의

6. 修 正 案 의 要 旨

- 수정이유
 -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후에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'명예구민증 수여'로 되어있는 제명을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'명예구민 선정조례'로 변경하고 제명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수정함.

○ 수정안 본문

안 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중수여조례안”을 “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선정조례안”으로 함.

안 제1조중 “내·외국인에게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중(이하 “명예구민중”이라한다)의 수여에 관한”을 “내·외국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(이하 “명예구민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는”으로 함.

안 제2조의 제목 “수여대상”을 “대상”으로 하고, 동조중 “명예구민중 수여대상자는”을 “명예구민 대상자는”으로 함.

안 제3조중 “명예구민중 수여”를 “명예구민”으로 함.

안 제4조의 제목중 “수여대상자 결정”을 “대상자 결정”으로 하고, 동조중 “명예구민중 수여대상은”을 “명예구민은”으로, “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중수여심사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선정심사위원회”로 함.

안 제5조의 제목중 “수여의 방법”을 “명예구민중 수여”로 하며, 동조제1항중 “명예구민중 수여대상자로”를 “명예구민으로”로 하고, “명예구민중” 및 “명예구민중명서” 앞에 “서울특별시종로구”를 삽입하며, 동조제2항중 “명예구민중을 수여받은”을 “명예구민으로 선정된”으로 함.

안 제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“명예구민중을 수여받은 사람에”를 “명예구민에”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명예구민중 수여기록대장을”을 “명예구민 기록대장을”로 함.

안 제7조 제목 “수여취소”를 “선정취소”로 하고, 동조제1항중 “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”을 “명예구민으로 선정된”으로, “수여취지에”를 “선정취지에”로, “명예구민증 수여를”을 “명예구민 선정을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명예구민증 수여가”를 “명예구민 선정이”로 함.

안 제8조 제목중 “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”를 “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”로 하고, 동조제1항제1호중 “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”를 “명예구민 대상자로”로 하며, 동조동항제2호중 “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”을 “명예구민으로 선정된”으로, “수여의”를 “선정의”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명예구민증을 주관하는”을 “명예구민 주무”로 함.

7. 審 査 結 果 : 수정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수정안 대비표

원안	수정안
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중수여조례안	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선정조례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종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구정발전에 기여한 <u>내·외국인에게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중(이하 “명예구민중”이라 한다)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내·외국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(이하 “명예구민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는</u> ----- --
제2조(수여대상) <u>명예구민중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.</u> 1.-3. (생략)	제2조(대상) <u>명예구민 대상자는</u> ----- ----- 1.-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후보자 추천) 구청장,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(이하 “구 의원”이라 한다) 및 공공단체의 장,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은 <u>명예구민중 수여 후보자를</u> 추천할 수 있다.	제3조(후보자 추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명예구민</u> ----- -----
제4조(수여대상자 결정) <u>명예구민중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중수여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u>	제4조(대상자 결정) <u>명예구민은</u>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종로구명예구민선정심사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

원 안	수 정 안
제5조(수여의 방법 및 부상)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명예구민중 수여대상자로</u>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<u>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</u>를 수여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</u>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구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.	제5조(<u>명예구민중 수여</u> ---) ① --- ----- <u>명예구민으로</u>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과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명서</u>를 수여한다. ② ----- <u>명예구민으로 선정된</u> -----
제6조(사후관리) ①<u>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</u>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 ②<u>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</u>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, 구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 ③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<u>명예구민중 수여기록대장을</u>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	제6조(사후관리) ①<u>명예구민에</u> ----- ----- ----- ②<u>명예구민에</u> ----- ----- ----- ③ ----- <u>명예구민 기록대장을</u> ----- -----
제7조(수여취소) ①구청장은 <u>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</u>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명예구민중 수여를</u> 취소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명예구민중 수여가</u>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.	제7조(<u>선정취소</u>) ① ----- <u>명예구민으로 선정된</u> ----- <u>선정취지에</u> ----- ----- ----- <u>명예구민선정을</u> ----- ② ----- <u>명예구민선정이</u> ----- ----- -----

원 안	수 정 안
제8조(명예구민중 수여심사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. 1. <u>명예구민중 수여대상자로</u>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 2. <u>명예구민중을 수여 받은</u> 사람에 대한 그 <u>수여의</u> 취소여부 3. (생 략) ② (생 략)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 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, 위원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<u>명예구민중을 주관하는</u> 부서의 과장이 된다. ④-⑤ (생 략)	제8조(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) ①-- ----- ----- -- 1. <u>명예구민 대상자로</u> ----- ----- 2. <u>명예구민으로 선정된</u> ----- ----- <u>선정의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명예구민 주무</u> ----- ----- ④-⑤ (현행과 같음)